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삭제 <2024. 7. 9.>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4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6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7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1호	150	300	500
나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	법 제76조제2항제1호	60	120	200

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				
다. 법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2호			
		60		
		120		
		200		
라. 법 제7조제4항,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)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3호			
		60		
		120		
		200		
마.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4호	60	120	200
바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)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5호			
		60		
		120		
		200		
사.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6호	60	120	200
아.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)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가)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2호			
			150	

나) 공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			300	
다) 공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		500	
2)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			500	
자.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 조치 계획,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7호			
1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	60	
2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			120	
3) 결과보고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		200	
차.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8호	60	120	200
카.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9호	60	120	200
타. 법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3호	150	300	500
파. 법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0호	60	120	200
하. 법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1호			
1)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		60	120	200
2) 최대허용오차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	200		
거. 법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	법 제76조제2항제12호	60	120	200

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				
너. 법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3호	60	120	200
더.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(법 제35조제1호 본문 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)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4호	150	300	500
러.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(법 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)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4호	60	120	200
머. 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·대여하거나 양도·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(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)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5호	60	120	200
버. 법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5호	150	300	500
서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6호	150	300	500
어.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않은 교정 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6호	60	120	200
저.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7호	60	120	200
처. 삭제 <2024. 7. 9.>				

커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19호	60	120	200
터.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20호	60	120	200
피.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21호	60	120	200
허.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)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)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22호		60 120 200	